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5.

파 주 시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 통보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14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내역

대지위치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건축주등	위반내용 및 규모	위반법규	비고
월릉면 은행나무길 90 [위전리 627]	사O석	-주택(증축)[앞,뒤] 15.7㎡ 조립식판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15㎡ 컨테이너	「건축법」 제14조 제20조	행정처분 사전통지
적성면 적암리 233-1	김O일	-동식물관련시설(신축) 424㎡ 철파이프 -동식물관련시설(신축) 177㎡ 철파이프 -동식물관련시설(신축) 96㎡ 조립식판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42㎡ 철파이프	「건축법」 제11조 제20조	행정처분 사전통지
문산읍 문산역로 77 [문산리 17-363]	도O관 (주)하늘	- 근생 →주택(3층) 295.12㎡ 철근콘크리트	「건축법」 제19조	부과예고 통보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 031-940-476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